

ILO 플랫폼 협약은 노동조건 관련한 알고리즘 설명·검토를 규정한 것으로 알고리즘 자체의 공개를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7.30.(목) 중앙일보, “배달라이더에 일감 주는 알고리즘, 정부 공개 추진”
- 7.30.(목) 연합뉴스, “정부, 배달라이더 일감배정 알고리즘 공개...ILO 협약 비준 추진”
- 7.29.(수) 매일경제, “정부, ‘일하는 사람 기본법’으로 ILO플랫폼노동협약 비준 검토”

- 정부가 일자리 플랫폼 운영자의 일감 배정 알고리즘 공개를 의무화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제·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 관련 협약’ 비준을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인공지능기본법 등에 협약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배달 노동자에게 고용·계약 조건과 일감 배정 기준 등을 투명하게 설명하는 방안으로는 플랫폼 알고리즘 공개가 추진된다. 정부는 관련 근거가 이미 인공지능 기본법에 마련돼 있다고 보고, 이를 플랫폼 노동 분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 설명 내용

- '26.6.12. 채택된 ILO 플랫폼 협약은 업무 관련 결정을 생성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알고리즘이 노동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 등 사실관계를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제13조),
 - 노동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에 대해, 플랫폼 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적절한 인간 개입을 통해 서면 설명 및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제15조)
 -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알고리즘 자체를 공개하라는 취지가 아님

- 한편, 현재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르면 인공지능으로 인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인공지능 이용사실 고지(제31조),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원리 설명(제3조, 제34조제1항),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의 관리·감독(제34조제1항) 등을 이미 규정하고 있음
- 정부는 현재 국내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정해진 바 없음

담당 부서	노동정책관 노무제공자지원과	책임자	과 장	허기훈 (044-202-7761)
		담당자	사무관	김윤지 (044-202-7762)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강연 (044-202-7129)
		담당자	사무관	정혜진 (044-202-7133)